

특허협력조약

발신: 국제조사기관

PCT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PCT규칙 43의2.1)

수신:
특허법인 씨엔에스

대한민국 06292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30길 13, 대림
아크로텔 7층

발송일 (일/월/년) 2018년 03월 26일 (26.03.2018)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161304POSCO

추가적인 조치
아래 2를 참조

국제출원번호
PCT/KR2017/012884

국제출원일 (일/월/년)
2017년 11월 14일 (14.11.2017)

우선일 (일/월/년)
2016년 11월 14일 (14.11.2016)

국제특허분류(IPC)
C09D 5/08(2006.01)i, C09D 7/12(2006.01)i, C08L 85/02(2006.01)i, C09D 201/00(2006.01)i

출원인
주식회사 포스코

1. 본 견해서는 다음 기재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 제1기재란 견해서의 기초
- 제2기재란 우선권
- 제3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부작성
- 제4기재란 발명의 단일성 결여
- 제5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 제6기재란 특이 인용문헌
- 제7기재란 국제출원의 흠결
- 제8기재란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2. 추가적인 조치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되면, 본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의 견해서로 간주될 것입니다. 다만, 출원인이 본 기관 이외의 기관을 IPEA로 선택하고, 그 선택된 IPEA가 PCT규칙 66.1의2(b)에 따라 본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가 위와 같이 간주되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본 견해서가 상기와 같이 IPEA의 견해서로 간주되는 경우, 출원인은 서식 PCT/ISA/220의 발송일로부터 3월 또는 우선일 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전에 의견서 및 보정서(해당하는 경우)를 IPEA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사항에 대하여는 서식 PCT/ISA/220에 대한 안내문을 참조하십시오.

ISA/KR의 명칭 및 우편주소
대한민국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팩스번호 +82-42-481-8578

본 견해서의 완료일
2018년 03월 26일 (26.03.2018)

심사관
장기정
전화번호 +82-42-481-8364



제1기재란 본 견해서의 기초

1. 언어와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출원시의 언어로 된 국제출원

국제조사를 위하여 _____ 로 번역되어 제출된 국제출원의 번역문
(PCT규칙 12.3(a) 및 23.1(b))

2. 본 견해서는 PCT규칙 91에 따라 당해 기관이 허가하였거나 당해 기관에 통보된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습니다(PCT규칙 43의2.1(a)).

3. 국제출원에 게시된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과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a. 아래의 형태로 출원시 국제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열목록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b. PCT 규칙 13의3.1(a)에 따라 국제출원과 함께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c.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국제출원일 이후에 아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규칙 13의3.1(a))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규칙 13의3.1(b) 및 시행세칙 713)

4. 추가로 서열목록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버전이나 사본이 제출된 경우, 후속 버전 또는 추가된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출원시 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정보와 동일하거나 또는 출원시의 게시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진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 추가 의견:

제5기제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1. 견해

신규성 (N)	청구항	1-20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진보성 (IS)	청구항	1-20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산업상 이용가능성 (IA)	청구항	1-20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2. 인용문헌 및 설명:

참고한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 D1: KR 10-1637129 B1 (주식회사 포스코) 2016.07.06
- D2: JP 08-183144 A (TAKIRON CO., LTD.) 1996.07.16
- D3: KR 10-2015-0075000 A (주식회사 포스코) 2015.07.02
- D4: KR 10-2016-0067278 A (주식회사 포스코) 2016.06.14
- D5: KR 10-2016-0070310 A (주식회사 포스코) 2016.06.20

2. 신규성 및 진보성

2.1. 청구항 제1항 내지 제7항

청구항 제1항에 기재된 발명은 연료탱크 강판용 복합수지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고분자 수지; 경화제; 내부식 첨가제; 폴리포스파젠 고분자 화합물을 포함하는 밀착증진제; 및 잔부 용제를 특정 중량% 범위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구항 제1항과 인용문헌 D1은 연료 탱크용 강판 코팅용 조성물에 고분자 수지, 경화제, 내부식 첨가제를 포함하는 점에서 동일하나, 청구항 제1항은 폴리포스파젠을 복합수지코팅층과 도금층 간의 밀착성 향상을 위한 밀착증진제로 더 포함하는 점에서 상기 인용문헌 D1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상기 차이점은 상기 인용문헌들 D1 내지 D5를 함께 고려해 보아도 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1항은 PCT 제33조(2)에 따른 신규성 및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이 있습니다.

청구항 제2항 내지 제7항은 청구항 제1항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는 종속항이므로 PCT 제33조(2)에 따른 신규성 및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이 있습니다.

2.2. 청구항 제8항 내지 제18항

추가 기재란에 계속

제8기재란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청구범위, 발명의설명 및 도면의 명료성에 관하여 또는 청구범위가 발명의설명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청구항 제5항의 “트리메톡시메틸”은 “트리메톡시메틸 멜라민”의 오기로 판단됩니다(PCT 제6조).

청구항 제2항, 제3항, 제9항 및 제11항은 수평균 분자량의 단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한정하고 있는 수평균 분자량이 지시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2항, 제3항, 제9항 및 제11항은 청구항의 지시하는 바가 불명확하므로 PCT 제6조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본 국제조사기관은 청구항 제2항, 제3항, 제9항 및 제11항의 수평균 분자량의 단위를 g/mol로 가정하여 견해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제5 기재란의 연속

청구항 제8항에 기재된 발명은 연료탱크용 복합수지코팅강판에 관한 것으로 강판; 강판에 형성된 도금층; 및 도금층에 형성된 복합수지코팅층을 포함하는 것으로, 상기 복합수지코팅층은 제1항의 복합수지 조성물과 동일한 구성에 해당합니다. 청구항 제1항의 복합수지 조성물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음은 상기 단락 2.1.에서 이미 살핀 바 있으므로, 이와 동일한 구성을 포함하는 청구항 제8항의 복합수지코팅강판의 신규성 및 진보성 또한 인정됩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8항은 PCT 제33조(2)에 따른 신규성 및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이 있습니다.

청구항 제9항 내지 제18항은 청구항 제8항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는 종속항이므로 PCT 제33조(2)에 따른 신규성 및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이 있습니다.

2.3. 청구항 제19항 및 제20항

청구항 제19항에 기재된 발명은 연료탱크용 복합수지코팅강판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강판을 준비하는 단계; 강판에 도금층을 형성하는 단계; 도금층에 연료탱크 강판용 복합수지 조성물을 도포하는 단계; 및 이를 특정 온도에서 건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상기 복합수지 조성물은 제1항의 복합수지 조성물과 동일한 구성에 해당합니다. 청구항 제1항의 복합수지 조성물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음은 상기 단락 2.1.에서 이미 살핀 바 있으므로, 이와 동일한 구성을 포함하는 청구항 제19항의 복합수지코팅강판의 제조방법의 신규성 및 진보성 또한 인정됩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19항은 PCT 제33조(2)에 따른 신규성 및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이 있습니다.

청구항 제20항은 청구항 제19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이므로 PCT 제33조(2)에 따른 신규성 및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이 있습니다.

2.2. 산업상 이용 가능성

청구항 제1항 내지 제20항에 기재된 발명은 PCT 제33조(4)에 따라 산업상 이용 가능합니다.